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가단3336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 나성태, 정찬수

원고보조참가인1. 황성군

소송대리인 C

2. 재단법인 D

소송대리인 E

피고1. 주식회사 F

2. 주식회사 G

3.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배장환

변론 종결2020. 10. 8.

판결 선고2020. 11.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3.부터, 피고 주식회사 F는 2019. 8. 19.까지, 피고 주식회사 G는 2019. 8. 22.까지, 피고 H은 2019. 7. 26.까지 각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H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2018. 3. 14. 피고 F, G(이하 이들을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들이 제작할 영화 'T'에 대한 제작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D과 황성균(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이하 '을'이라 한다)는 극장용
영화 [I](이하 '본 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 건 영화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해 명시하여 명확히 한다.

(1) 제목 : I (가제)

(2) 감독 : J (확정)

(3) 출연 : K, L, M, N (확정)

O, P, Q (섭외예정)

(5) 지원금 : 일금 200,000,000원정(일금이억원정)

(7) 개봉예정 : 2018년 하반기

(8) 계약기간 : 2018년 3월 14.일 ~ 2018년 12월 31.일

제3조(투자 및 제작지원 조건)

1. 갑은 본 건 영화를 제작하는 을에게 일금 200,000,000원정(일금이억원정)을 지원하기로 한다.
3. 지원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 후 본건 영화의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한 을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청구에 의해 선급금 일금 100,000,000원(일금일억원정)을 7일 내에 지급하고, 촬영 완료 후 후반작업 시 청구에 의해 잔금 일금 100,000,000원(일금일억원정)을 7일 내에 지급한다.
4. 을은 본 건 영화의 제작에 있어 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하며, 본 건 영화의 촬영장소 중 80%에 해당하는 장소를 갑의 지역인 횡성군 및 강원지역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7. 갑이 을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본 건 영화의 제작비 지출 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1. 순제작비 및 총제작비, 캐스팅 사항은 제작환경에 따라 확대 및 축소 될 수 있으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을은 갑에게 그 내용을 정확히 제공하여야하며, 변경된 사항이 제2조의 계약의 대상물과 현저히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연대하여 갑에게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본 건 영화의 제작이 중단되거나 계약기간(유효기간) 내에 영화가 개봉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연대하여 갑에게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3. 갑이 지원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을이 영화제작을 지연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 내용의 이행을 최고하고, 7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지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한다.

제8조(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피고 회사들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

4. 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들, 보험기간 2018. 3. 14.부터 2018.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H, 소외 R는 피고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지원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들은 2018. 12. 31.까지 영화 'T'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201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5. 3. 원고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8. 11. 21.경 수신자를 '주식회사 F 대표, 주식회사 G 대표'로 한 "영화 I 제작지원 선급금 반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고 F 대표 R에게 보냈다. 위 공문에는 "영화 I의 현재 제작 상황이 계약의 내용대로 제작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상호 확인한 바, 이에 따라 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작지원 선급금 전액 반환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선급금 반환기일은 '2018. 12. 14. 18:00', 선급금 반환 계좌는 'D 명의 S조합 T'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반환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1) 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 제1항

변경된 사항이 제2조의 계약의 대상물과 현저히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연대하여 갑에게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계약의 대상물의 주요사항이 대부분 변경되고 기존 계약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1. 제목 : I → U2. 감독 : J → V3. 출연 : K 출연 → K 출연불가4. 개봉 : 2018년 하반기 → 연내 개봉불가

2) 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 제2항

본 건 영화의 제작이 중단되거나 계약기간(유효기간) 내에 영화가 개봉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연대하여 갑에게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계약기간 내에 영화가 개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함1. 계약기간 : 2018년 12월 31.일

(나) 이에 피고 G의 대표이사 R는 2018. 12. 12.경 D에게 "횡성군 지원자금 반환 일자 연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에는, 우선 이 사건 지원계약상 제작일정을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과, 만일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5월 말까지 반환시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자 D은 2018. 12. 17.경 수신자를 '주식회사 F 대표, 주식회사 G 대표'로 한 "'지원자금 반환 일자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고 F 대표 R에게 보냈고, 위 공문에는, 2019. 1. 25.까지 2018년도 추진사항(주요일자별 진행내역), 답사기록과 헌팅리스트(횡성군 및 강원도), 감독(V), 작가(W) 계약서, P, X 등을 포함한 출연자의 계약서 또는 출연확인서, 최종 시나리오, 기타 배급, 투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등 영화가 제작, 상영될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이 사건 지원계약의 계약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 G의 대표 R는 2019. 1. 28.경 D에게 "영화 I 제작지원금 반환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에는, 2019년 4월 안에 V 감독, P, X과 계약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3월, 4월, 5월 3회에 걸쳐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지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들이 제시한 제작 일정표에 따르면, 2018. 4. 14. 제작발표회를 가지고, 2018. 4. 16.부터 2018. 6. 30.까지 촬영을 진행하며, 이후 2018. 8.말까지 편집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 횡성군(이하 '횡성군'이라고 한다)은 D에 기금을 출연하였고, D은 위 기금으로 이 사건 지원계약에 따른 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횡성군은 2019. 4.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횡성군에서 파견한 사무관이 D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피고 H이 2019. 11. 2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R는 피고에게 원하는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를 함께 진행해보자고 하면서 그에 앞서 먼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1. 주식회사 F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중간생략) 즉 피고는 R의 부탁에 따라 피고1.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급여를 받아가는 등 어떠한 권리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R는 2018.경 황성군 등의 제작 지원을 받아 고 K 배우를 주연으로 하는 I이라는 영화를 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작사로 피고2. 주식회사 G 뿐만 아니라 피고1.도 포함되어야 하니 관련 서류들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본건 지급보증보험, 연대보증에 날인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점, ② 위 R가 2019. 4. 4. 피고 H에게 작성해준 확약서에도 "현재 H이 Y으로부터 청구받고 있는 1억원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가 공동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모든 채무부담 의무는 주식회사 G에게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실제 피고 F와 피고 G는 호실(Z호, AA호)만 빼고 나머지 주소가 완전히 동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황성군은 D에게 이 사건 지원계약 해제 통지의 발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F 대표인 피고 H은 피고 G 대표 R에게 이 사건 지원계약 해제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이 2018. 11. 21.경 피고 회사들 앞으로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당시 이미 이 사건 지원계약의 대상인 영화 'T'은 주연배우 K의 사망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제작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계약기간 내에 개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원계약은 2018. 11. 21.경 위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원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 회사들은 D, 황성군에게 선급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H은, 선급금이 모두 영화 제작에 사용되었고, 2018. 11.경 주연배우 K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제작이 중단되었던 것이어서 영화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것을 피고 회사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연배우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지원계약의 상대방인 황성군, D에 대한 관계에서 영화 제작 중단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선급금은 본래부터 영화 제작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영화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선금금반환의무가 없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지원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회사들의 선금금반환의무가 발생하고, 피고 회사들이 위 선금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H은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시하고 있는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로는 연 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보험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9. 5. 4.부터 2019. 6. 2.까지 약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493,150원($= 100,000,000\text{원} \times 30/365 \times 0.0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 H은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7.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민

별지